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 
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
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

2015년 10월 8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<sup>10/08</sup>  
이창우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1231호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

### □ 폐지이유

동작골안전지킴이가 자율방재단으로 단체 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동작골안전지킴이 활동과 관련하여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